

2022년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(국제공동치매 연구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2년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(국제공동 치매 연구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마련)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2월 17일

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
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목인희

< 2022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>

2022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

- ▲혁신적·창의적 연구주제 및 기법 도입을 통한 치매극복 핵심기술 개발
- ▲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성 높은 치매극복 기술 발굴 및 고도화

2022년도 전략목표

치매 전주기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체감형 성과 기반 확보,
치매연구자-타분야 연구자간 교류 강화를 통한 미래 혁신역량 강화

6대 분야 중점 추진방향

개방·연결·융합을
통한 R&D 혁신

- ① 지속가능 기술혁신을 위한 성과·데이터 교류 활성화 지원
- ② 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융·복합 분석기술 개발

공익적 R&D
투자 강화

- ③ 빅데이터, 인공지능을 기반한 치매 예측·진단기술 고도화
- ④ 국민 체감형 기술개발을 통한 치매 예방·관리 지원 강화

기초·임상 중개연구
생태계 조성

- ⑤ 국가치매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 구축
- ⑥ 치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I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제안요청서(RFP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세부사업명	공고단위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/ 과제구성요건	선정예정 과제수
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 (국제 공동치매 연구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)	한국형 치매(K-dementia) 통합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	연간 1,334백만원 이내 (1차년도 1,000백만원)	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지원대상) 산·학·연·병 • 주관연구개발과제 및 공동/위탁 연구개발과 제 추가구성 필수(주 관연구개발과제 단독 구성불가) 	1

Ⅱ. 신청요건

□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**신청마감일로부터**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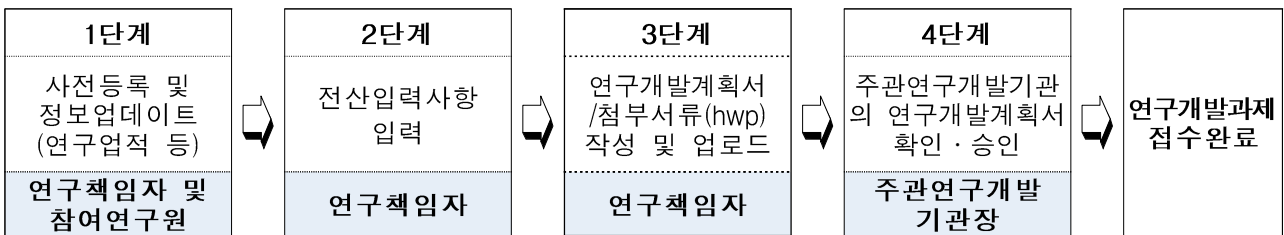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'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' 클릭
- ※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'연구자 권한'으로 신청 가능

□ 신청절차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공고단위 (RFP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(전산입력)	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
한국형 치매(K-dementia) 통합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	2022. 3. 18 16 : 00	2022. 3. 21 16 : 00

※ **신청 마감시간(16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**

※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
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2022.1.1. 개정)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-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 * 단, '22년 80%이하	25% 이상 * 단, '22년 20%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 * 단, '22년 10%이상
공기업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 도입비·연구 재료비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$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 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)} \times 100$		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필요하며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및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단, '22년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종료전까지 납입가능)
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 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,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 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참여기업 부담 현금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 - 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을 작성·첨부하여 '과제평가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
 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,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&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	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	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	납부 상한
대기업/공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20%	R&D성과매출액X기술 기여도X20%	정부출연금의 40%
중견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10%	R&D성과매출액X기술 기여도X10%	정부출연금의 20%
중소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5%	R&D성과매출액X기술 기여도X5%	정부출연금의 10%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www.mohw.go.kr),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www.msit.go.kr)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
- 사업단 :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(www.kdrc.re.kr)

☞ 문의사항은 **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** 질의응답(Q&A)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담당자 안내

구분	공고단위(RFP)	사업내용(RFP)안내	
		담당	연락처
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 (국제 공동치매 연구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)	한국형 치매(K-dementia) 통합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	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단 R&D기획팀	02-3668-7389 02-3668-7390